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9
----------	-----

제출년월일 : 2005. 9.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 나. 각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라. 회의 및 회의록의 기록·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마.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바. 각 협의체 위원의 회의수당 지급 및 운영비 보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3. 자치법규안 : 불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령) 발췌 별첨
- 나. 입법예고(2005. 6. 13 ~ 7.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다. 예산관련사항 : 회의참석수당 예산 반영(소요액 : 11,900천원/년)
 - 대표협의체 : 4,760천원(70,000원 × 17명 × 4회/년)
 - 실무협의체 : 7,140천원(70,000원 × 17명 × 6회/년)
- 다. 참고자료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표준안
 - 경상북도 사회노인복지과 - 54(2005.1.4) · 5144(2005.5.3)호
 - 경상북도 사회노인복지과 - 5532(2005.5.10) · 6410(2005.5.30)호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과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요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영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 및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발췌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 제7조 제3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조의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철저

1.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3347(2005. 1. 3)호의 이첩 및 사회복지과-8585(2004. 9.21)호와 관련입니다.

2. 2003. 7. 30일 개정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6960호)은 2005. 7. 31일부터 시·군의 사회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 제7조의2)

3. 각 시·군에서는 관련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관련법령 시행일(2005. 7. 31) 이전 시·군 협의체가 내실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시·군 협의체는 시·군내 보건·복지등 관련분야의 민·관협력기구로서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도 하반기 중 전국 시·군·구 협의체 구성시 선형사례 및 지역거점 사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2개 시·군·구에 우선 구성을 추진하여 온 바, 각 시·군에서는 【붙임】안내에 따라 우선 구성지역의 선형 사례를 참조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 구성 등을 통한 협의체 구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우선 구성 대상지역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9개): 서울 서초구, 부산 부산진구·사하구, 광주 남구, 강원 춘천시, 경북 안동시, 충남 공주시, 충북 옥천군, 울산 울주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지역(13개): 부산 금정구, 대구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인천 계양구, 울산 남구, 경기 부천시, 충북 제천시, 충남 연기군, 경남김해시, 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제주 북제주군

0 추진경과

- 공무원대상 지침교육(04. 9월), 구성 추진현황 점검(04. 10월), 협의체 민간 위원대상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04. 12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 구성

0 목적

- 협의체 구성단계에서부터 민-관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의 장 마련

0 준비단의 구성

- 인 원 : 단장, 간사 포함 15명 이내

* 단장은 가급적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시·군에서는 부자치단체장이 단장으로 참여

- 구성원(예시)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공익단체(지역사회 시민단체 포함) 대표자
- 주민대표(복지관련 상임위 소속 시의원 등)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 기타 고용서비스 분야 등 기관·단체의 대표자

0 준비단의 기능

- 협의체 구성·운영 조례안 마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안 마련
-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분야 민·관협력방안 논의
- 각 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공유
- 각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참여자의 발굴 및 추천

0 운영기간 : ~ 협의체 구성 완료시까지

0 구성시기 : 2005. 1월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정

0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4항

0 조례내용: 상위 법령의 범위안에서 각 협의체 조직·운영에 관한사항

* 불임 안내 중 조례안 참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예산 확보

0 협의체 회의를당 등 운영비 및 각종 사업예산 등 2005년도 협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경예산 반영 등 준비 철저

□ 향후 추진일정

- 각 시·군 협의체 준비단 구성 (2005. 1월)
- 협의체 준비단 교육 (2005. 2월 예정)
- 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제정 (2005 상반기)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안 마련(2005. 3월)
- 협의체 참여자(민간위원) 교육 (2005. 5월 예정)
- 협의체 구성·운영관련 법령 시행 (2005. 7. 31)

※ 세부내용은 붙임 안내 참조

붙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 끝.

경상북도지



수신자 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여성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시장 군수

★지방행정주사 이세명 지방행정사무관 오창민 사회복지과장 홍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 권양자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54 (2005.01.04.) 접수 사회복지과-242 (2005.01.05.)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2449 /전송 (053)950-2419 / jmlee@gb.go.kr / 공개

차 례

- I.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배경 및 목적
 -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배경 및 경과
 -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
 -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방향
- II.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 모형
 - 1. 개 요
 -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 가. 대표협의체 기능
 - 나. 실무협의체 기능
 - 다. 실무분과 기능
 - 3. 각 협의체의 구성
 - 가. 각 협의체 구성
 - (1) 대표협의체 구성
 - (2) 실무협의체 구성
 - (3) 실무분과 구성
 - 나. 각 협의체 구성의 단계별 추진
- III. 지역별 특성에 따른 협의체 구성 모형
 - 1. 지역구분의 기준
 - 2.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
 - 3.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
- IV.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1. 협의체의 운영원칙
 - 2. 협의체의 운영
 - 가. 협의체 회의 운영
 - 나. 협의체 운영의 지원
 - 3. 협의체의 주요사업
- V. 시·군·구(사회복지과)와의 관계
 - 1. 개 요
 -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지원
 -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 VI.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일정 및 증명추진사항

<붙임>

-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조례(안)
-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3단대비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

2004. 12.

보건복지부

<붙임 1>

00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0조의0 내지 제0조의 00의 규정에 의하여 00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복지사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00 시군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0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부군수, 부구청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00과장(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과장), 00과장(보건소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군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군구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2>

사회복지사업법 제3대비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편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제15조의3제1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p> <p>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p>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p> <p>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p>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p>		<p>제1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p> <p>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p> <p>제1조의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p>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령) 이 조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 7조에 의한 00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의는 이를 폐지한다.</p> <p>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령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사 군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00사군구 000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령)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 7조에 의한 00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의는 이를 폐지한다.
-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변경 알림

1.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평가팀-356('05.5.2)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중 현실에 맞게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불임과 같이 변경(안)을 보내드리니 조례 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변경(안) 내용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비교표. 끝.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장군수(사회복지과장)

이원철 지방행정사무관 송찬환 사회노인복지과장 전결 05/03
 홍영선

협조자

시행 사회노인복지과-5144 (2005.05.03.) 접수 사회복지과-8029 (2005.05.04.)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2484 / 전송 (053)950-2419 / Lsaing@gb.go.kr / 공개

②가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가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사 군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가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군구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가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가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재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가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가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사 군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가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가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가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재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가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가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 3. 심의사항
- 4. 심의결과
-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사 군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가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 3. 심의사항
- 4. 심의결과
-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사 군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p>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p>	<p>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00사군구 000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00사군구 000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부 칙</p>
<p>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 7조에 의한 00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 7조에 의한 00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차 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

2005. 5.

보건복지부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배경 및 목적	3
가. 협의체 추진배경 및 경과	3
나. 협의체 목적	4
다. 협의체 추진방향	4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 모형	6
가. 개요	6
나. 협의체의 기능	6
1) 대표협의체 기능	6
2) 실무협의체 기능	7
3) 실무분과 기능	9
다. 협의체의 구성	10
1) 각 협의체 구성	10
가) 대표협의체 구성	10
나) 실무협의체 구성	13
다) 실무분과 구성	14
라) 통합서비스 지원분과 구성	14
2) 협의체 구성의 단계별 추진	18
3. 지역별 특성에 따른 협의체 구성 모형	20
가. 지역구분의 기준	20
나.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구성	20
다.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구성	22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3
가. 협의체 운영원칙	23
나. 협의체 회의	23
다. 협의체 주요사업	27
5. 시·군·구(사회복지사무소)와의 관계	28
가. 개요	28
나. 협의체 구성지원	28
다. 협의체 운영지원	30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일정 등	32

00 사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00사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사 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00 시군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현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0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부군수, 부구청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의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00명(팀)장(시군구 사회복지담당), 00명(팀)장(보건의료 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의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사 군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회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사 군 구청장은 회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회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회의회에 출석한 위한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00시군구 000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 7조에 의한 00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3단계비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군구(자치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1조의5(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군구(자치) 조례로 정한다. ③제7조의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제1조의5(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안내(지침) 추가 변경 통보

1.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평가팀-457('05.5.26)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력체로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여타 위원회(위원장이 단체장)의 상위 심의기구임에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와의 상호 역할과 위원장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위원회와의 명확한 역할관계 정립을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불임과 같이협의체의 위원장을 단체장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지침)변경 1부
- 2.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 비교표 1부. 끝.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장군수(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주사보 이원철 지방행정사무관 송찬환 사회노인복지과장 홍영선 전결 05/30

협조자

시행 사회노인복지과-6410 (2005.05.30.) 접수 사회복지과-9574 (2005.05.31.)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2484 /전송 (053)950-2419 / Lsaing@gb.go.kr / 공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지침) 변경내용

구분	변경내용		비고 (사유)
	변경전	변경후	
안내 (지침) p14	대표협의체 구성대상(표2)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시군구 부자치단체장	대표협의체 구성대상(표2)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시군구 자치단체장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의 장이 자치단체장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역할관계와 위원장간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됨
안내 (지침) p37 (붙임1)	운영조례(안) 제3조(구성)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되, <u>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은 당연직</u> 위원이 된다	운영조례(안) 제3조(구성)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되, <u>시장(군수·구청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은</u> 당연직 위원이 된다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 현황

구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의료급여법제6조	영유아보육법제6조
목적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건의	생활보장사업에 관한사항 심의·의결	장애인복지관련사업에 필요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보육계획수립 등 심의
인원	위원장을 포함 10이상 20인이하	-	위원장 1인포함 30인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포함 5인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내
임원	위원장(부자치단체장) ※공동위원장 가능	위원장(자치단체장)	위원장(자치단체장)	위원장(자치단체장)	위원중 호선
구성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사회복지업무또는 보건의료 업무담당 공무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	○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 당해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	○ 보육전문가 ○ 보육시설의 장 ○공익을 대표하는 자 ○ 관계 공무원
임기	2년(연임가능)	2년(연임가능)		3년(연임가능)	2년(연임가능)
기타		다른위원회가 기능 대행 가능		다른 위원회가 기능 대행 가능	